

사업용자동차 ☐ 정기검사 ☐ 임시검사 합격통지서				
자동차 등록번호		차		종
차		명		형식 및 연식
차대번호		원동기형식		
사용본거지				
소유자	성명(명칭)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
	주소	(전화:)		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동차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☐정기검사 ☐임시검사 에 합격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.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(서명 또는 인)				
※ 유의사항 차령을 연장하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55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합니다)에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(전자문서로 된 통지서를 포함합니다)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하며, 차령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차령 연장조정이 불가합니다. 다만,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,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				